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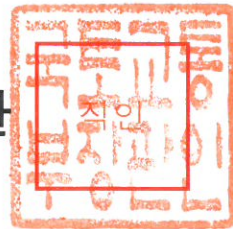
##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

- 인정번호 : 제10호
- 상품명 : 두라인(2 Line)
- 대피시설 형식 : 탈출형 대피시설
-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(유)대한주택안전(대표: 양강례)
- 공장소재지 :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 7번로 135-16
- 유효기간 : 2025년 3월 10일까지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피시설을 인정합니다.

2022년 3월 11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

첨부서류 : 인정 조건 1부

## 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조건

아파트 대피시설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의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피시설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특히 관련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피시설의 인정을 취소함

### < 일반사항 >

- 가. 「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인정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
- 나.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(NFSC 301)」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
- 다.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방안에 따라 연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
- 라. 거실과 대피시설이 설치된 공간 사이의 출입문은 60분+ 방화문(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)을 설치할 것
- 마. 대피시설의 무상 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고장 시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, 관련 내용을 설계자, 시공자, 사용자 등에게 고지할 것

### < 특히 관련 >

- 가. 대피시설과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한다.

끝.